

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1.07.02.
3. 주요 정정사항 : 운용역 변경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운용역 변경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변경전1>	<변경후1>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박정훈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옥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찬양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용재
투자자유 의사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고난도금융상품 관련 사항 반영	가. ~ 마. <생략> <신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전문인력 변경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정훈 → 홍찬양)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관옥 → 이용재)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부책임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1.05.31 기준)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기준일 갱신	책임운용전문인력 : 박정훈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옥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찬양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용재

<p>나.책임.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p>		<p>책임운용전문인력 <u>박정훈 : 2021.02.01 ~ 현재</u></p> <p>부책임운용전문인력 <u>정관옥 : 2018.03.30 ~ 현재</u></p>	<p>책임운용전문인력 <u>박정훈 : 2021.02.01 ~ 2021.07.01</u> <u>홍찬양 : 2021.07.02 ~ 현재</u></p> <p>부책임운용전문인력 <u>정관옥 : 2018.03.30 ~ 2021.07.01</u> <u>이용재 : 2021.07.02 ~ 현재</u></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자구수정</p>	<p>가. 이익 배분</p> <p>(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6월 14일 이후 매년 결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v>	<p>가. 이익 배분</p> <p>(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p>(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p>	<p>(2) 상환금 등의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 규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p>(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현재 갱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	---	-----------------

<변경전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800%	0.535%	-	81	165	254	445	1,014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변경후 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비용 ·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800%	0.535%	-	0.805%	81	165	254	445	1,014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
구 보수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 운용역 변경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정관옥</u>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찬양</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이용재</u>

<끝>.